O 내각부령/경제산업성령 제1호

소비자 피해방지 및 그 회복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1년 법률 제72호) 및 소비자 피해방지 및 그 회복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정령의 정비에 관한 정령(2022년 정령 제4호)의 시행에 따라, 그리고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1976년 법률 제57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명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22년 1월 4일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경제산업대신 하기우다 고이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1976년 통상산업성령 제8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 표에 의해, 개정전 란에 열거하는 규정의 밑줄 친 부분을 여기에 순차 대응하는 개정후 란에 열거하는 규정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변경하며, 개정전 란 및 개정후 란에 대응하여 열거하는 그 표기부분(연속된 다른 규정과 기호에 의해 일괄하여 열거하는 규정은 그 표기부분에 관한 기재)에 이중으로 밑줄 친 규정(이하, “대상규정”이라고 한다)의 경우, 그 표기부분이 동일한 것은 해당 대상규정을 개정후 란에 열거하는 것처럼 변경하며, 그 표기부분이 다른 것은 개정전 란에 열거하는 대상규정을 개정후 란에 열거하는 대상규정으로 이동하고, 개정후 란에 열거하는 대상규정에서 개정전 란에 이에 대응하는 것을 열거하지 않은 것은 이를 추가한다.

|  |  |
| --- | --- |
| 개정 후 | 개정 전 |
| 목차  제1장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1절 [생략]  제2절 방문판매(제3조-제7조의 5)  [제3절~제5절 생략]  제2장 연쇄판매거래(제24조-제31조의 4)  제3장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제31조의 5-제39조의 2의 3)  제4장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제39조의 3-제46조의 4)  [제5장/제6장 생략]  부칙  제6조 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하는 법 제4조 제5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항, 제3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표 좌측 란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  | | --- | --- | | 일. 상품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5조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4조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신청자 등(법 제9조 제1항의 신청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 5에서 같다)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상품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나. “가”에 기재한 사항과 무관하게, 신청자 등이 판매업자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인하거나, 또는 판매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여, 이들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판매계약이 교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의 서면을 해당 신청자 등이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8일을 경과할 때까지, 해당 신청자 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  다. “가” 또는 “나”의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는 신청자 등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라~사 생략] | | 라. 권리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5조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4조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 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권리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나. “가”에 기재한 사항과 무관하게, 신청자 등이 판매업자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의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인하거나, 또는 판매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거나, 이들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판매업자가 교부한 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서면을 해당 신청자 등이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신청자 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  다. “가” 또는 “나”의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는 신청자 등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라~아 생략] | | 삼. 역무제공계약신청철회 또는 역무제공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5조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4조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역무제공계약신청철회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을 것.  나. “가”에 기재한 사항과 무관하게, 신청자 등이 역무제공사업자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역무제공계약신청철회 또는 역무제공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인하거나, 또는 역주제공사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거나, 이들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역무제공사업자가 교부한 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서면을 해당 신청자 등이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신청자 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  다. “가” 또는 “나”의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는 신청자 등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라~바 생략] |   [2~6 생략]  [조를 삭제한다]  (업무를 통괄하는 자에 준하는 자)  제7조의 2 [생략]  (영 제3조의 4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제7조의 3 영 제3조의 4의 해당 다른 법인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법인  가. 해당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영 제3조의 4의 사용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대표권을 가진 임원인 법인  나. 해당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그 총 주주(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의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총 사원 의결권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회사, 그 외 법인(외국에서 이들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회사 등”이라고 한다)  다. 해당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그 총 주주 또는 총 사원 의결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하는 회사 등(해당 회사 등의 자회사 등 및 관련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 판매업자 또는 역제제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법인  가. 해당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자회사 등, 해당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를 자회사 등으로 하는 모회사 등, 해당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를 자회사 등으로 하는 모회사 등의 자회사 등(해당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 해당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사회사 등 및 해당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를 자회사 등으로 하는 모회사 등은 제외한다) 및 해당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관련회사 등  나. 해당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임원(영 제3조의 4의 임원을 말한다. “다” 및 “라”에서 같다) 또는 그 사용인이 대표권을 가진 임원인 법인  다. 해당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임원 또는 그 사용인이 그 총 주주 또는 총 사원 의결권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50이하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회사 등  다. 해당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임원 또는 그 사용인이 그 총 주주 또는 총 사원 의결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하는 회사 등(해당 회사 등의 자회사 등 및 관련회사 등을 포함한다)  삼. 전2호에 열거하는 것 외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 업무의 일부 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해당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출자, 인사, 자금, 기술, 거래 등의 관계를 통해, 해당 법인의 재무 및 영업 또는 사업 방침의 결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 또는 해당 방침 결정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2 전항 제2호 “가”에 규정하는 “모회사 등”은 다른 회사 등의 재무 및 영업 또는 사업 방침을 결정하는 기관(주주총회, 그 외 여기에 준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한다)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등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재무상 또는 영업상 혹은 사업상의 관계로부터 보아 다른 회사 등의 의사결정기관을 지배하고 있지 않음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을 말하며, 전항 및 다음 항에 규정하는 “자회사 등”은 모회사 등에 의해 그 의사결정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모회사 등 및 자회사 등 또는 자회사 등이 다른 회사 등의 의사결정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다른 회사 등은 그 모회사 등의 자회사 등으로 간주한다.  일. 다른 회사 등(파산절차 개시결정, 재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갱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다른 회사 등, 그 외 이들에 준하는 다른 회사 등으로서, 유효한 지배종속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과반수를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는 회사 등  이.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50 이하를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등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한 요건에 해당할 것  가. 해당 회사 등이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과 해당 회사 등과 출자, 인사, 자금, 기술, 거래 등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가 있음으로써 해당 회사 등의 의사와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 및 해당 회사 등의 의사와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동의하고 있는 자가 소유한 의결권과 함께, 해당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  나. 해당 회사 등의 임원(이사, 집행역, 회사참여(회사참여가 법인일 때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원을 포함한다), 감사역 또는 이들과 유사한 직무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혹은 사용인인 자, 또는 이들이었던 자로서 해당 회사 등이 해당 다른 회사 등의 재무 및 영업 또는 사무방침의 결정에 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가 해당 다른 회사 등의 이사회, 그 외 이들에 준하는 기관의 구성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  다. 해당 회사 등과 해당 다른 회사 등과의 사이에 해당 다른 회사 등의 중요한 재무 및 영업 또는 사무 방침 결정을 지배하는 계약 등이 존재할 것  라. 해당 다른 회사 등의 자금조달액(대차대조표의 부채부에 계상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과반에 대해 해당 회사 등이 융자(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였을 것(해당 회사 등과 출자, 인사, 자금, 기술, 거래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가 행하는 융자 금액을 합해 자금조달액 총액의 과반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그 외 해당 회사 등이 해당 다른 회사 등의 의사결정기관을 지배하고 있다고 추측되는 사실이 존재할 것.  삼. 회사 등이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과 해당 회사 등과 출자, 인사, 자금, 기술, 거래 등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가 있음으로써 해당 회사 등의 의사와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 및 해당 회사 등의 의사와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동의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과 함께,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해당 회사 등이 자기 계산으로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를 포함한다)에서의 해당 회사 등으로서, 전호 “나”에서 “마”까지 열거하는 것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3 제1항에 규정하는 “관련회사 등”은 회사 등(해당 회사 등의 자회사 등을 포함한다)이 출자, 이사, 그 외 이에 준하는 직무에 대한 해당 회사 등의 임원 혹은 사용인인 자 혹은 이들이었던 자의 취임, 융자, 채무 보증 혹은 담보 제공, 기술 제공 또는 영업상 혹은 사업상 거래 등을 통해, 재무 및 영업 또는 사업 방침 결정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회사 등(자회사 등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단, 재무상 또는 영업상 혹은 사업상 관계에서 보아 회사 등(해당 회사 등의 자회사 등을 포함한다)이 자회사 등 이외의 다른 회사 등의 재무 및 영업 또는 사업 방침 결정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없음이 명확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회사 등(해당 회사 등의 자회사 등을 포함한다)이 자회사 등 이외의 다른 회사 등(파산절차 개시결정, 재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갱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자회사 등 이외의 다른 회사 등, 그 외 이들에 준하는 자회사 등 이외의 다른 회사 등으로써, 해당 회사 등이 그 재무 및 영업 또는 사업 방침의 결정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의 100분의 20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의 해당 자회사 등 이외의 다른 회사 등  이. 회사 등(해당 회사 등의 자회사 등을 포함한다)이 자회사 등 이외의 다른 회사 등 의결권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0미만을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회사 등 이외의 다른 회사 등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가. 해당 회사 등의 임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혹은 사용인인 자, 또는 이들이었던 자로서 해당 회사 등이 그 재무 및 영업 또는 사업 방침 결정에 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그 대표이사, 이사 또는 이들에 준하는 직무에 취임하고 있을 것  나. 해당 회사 등에서 중요한 융자를 받았을 것  다. 해당 회사 등에서 중요한 기술 제공을 받았을 것  라. 해당 회사 등과의 사이에 영업상 또는 사업상 중요한 거래가 있을 것.  마. 그 외 해당 회사 등이 그 재무 및 영업 또는 사업 방침 결정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측되는 사실이 존재할 것  삼. 회사 등(해당 회사 등의 자회사 등을 포함한다)이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과 해당 회사 등과 출자, 인사, 자금, 기술, 거래 등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가 있음으로써 해당 회사 등의 의사와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 및 해당 회사 등의 의사와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동의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과 함께, 자회사 등 이외의 다른 회사 등 의결권의 100분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해당 회사 등이 자기 계산으로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자회사 등 이외의 다른 회사 등으로서, 전호 “가”에서 “마”까지 열거하는 것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법 제8조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의 4 법 제8조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정지를 명 받은 업무의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로 한다.  (계약신청철회 등 방해 후의 서면 교부)  제7조의 5 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일. [생략]  이. 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는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매매계약 혹은 역무제공계약신청철회 또는 매매계약 혹은 역무제공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삼~십 생략]  [2~5 생략]  (통신판매에 대한 광고)  제8조 법 제10조 제6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이 생략]  삼.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외국법인 또는 외국에 주소를 가진 개인으로, 국내에 그 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무소, 사업소, 기타 이들에 준하는 자(이하, 이 호, 제25조 제3호 및 제40조 제3호에서 “사무소 등”이라고 한다)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 등의 소재장소 및 전화번호  [사~육 생략]  칠. 상품 혹은 특정권리의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을 2회 이상 계속해서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취지 및 금액, 계약기간, 그 외 판매조건 또는 제공조건  [팔~십 생략]  제9조 법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해 통신판매를 할 경우의 상품 혹은 특정권리의 판매조건 또는 역무제공조건에 대해 광고할 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일/이 생략]  삼. 상품 혹은 특정권리의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신청철회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법 제15조의 3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있어서 잘 보이는 위치에 명료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 그 외 고객에게 있어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제10조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호 및 제8조 제4호에 정하는 구매자 또는 역무제공을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전을 전부 표시하지 않기로 하며, 이 경우 법 제11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정하는 사항(제8조 제6호에서 제10호까지 열거하는 사항과 법 제15조의 3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매매계약 해제(이하, 이 조에서, “신청철회 등”이라고 한다)의 가부, 신청철회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철회 등이 가능한 기간, 그 외 신청철회 등이 가능해지는 조건 및 상품 또는 특정권리의 거래 또는 반환에 요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구매자 또는 역무제공을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전의 전부를 표시할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정하는 사항(제8조 제4호 및 제6호에서 제10호까지 열거하는 사항 및 법 제15조의 3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철회 가부, 신청철회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철회 등이 가능한 기간, 그 외 신청철회 등이 가능해지는 조건 및 상품 또는 특정권리의 거래 또는 반환에 요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에 관한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불이 상품 인도 혹은 권리 이전 또는 역무 제공 전인 경우에는 상품 혹은 권리의 대금 또는 역무대가의 지불시기,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관한 상품을 송부하지 않을 경우 혹은 권리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역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3호에 열거하는 사항 및 인도된 상품이 종류 또는 품질에 관해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판매업자가 그 부적합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생략]  (기록의 보존)  제11조의 5 법 제12조의 3 제3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전자적 방법은 제외한다)에 의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거나, 또는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승낙 또는 청우마다 해당 승낙 또는 청구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이하, 이 조, 제11조의 10, 제27조의 3 및 제42조의 3에서 “서면 등”이라고 한다). 단,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해당 승낙을 얻거나, 또는 청구를 받기 위해 정형적인 내용을 표시하고 있으면서, 해당 승낙을 얻거나, 또는 청구를 받았을 때 해당 승낙 또는 청구 내용에 관한 정보를 일람성 있는 전자적 기록으로 자동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정형적인 내용의 표시에 있어서, 해당 전자계산기의 조작이 해당 상대방에게 통신판매 전자메일로 광고하는 것을 승낙하거나, 또는 청구하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승낙을 얻거나, 또는 청구서를 받기 위해 표시한 정형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서면 및 해당 내용의 표시가 된 시기를 나타내는 서면 등.  이. [생략]  2. [생략]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제14조 법 제13조 제2항의 전자적 방법은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일/이 생략]  [2/3 생략]  (통신판매에서의 금지행위)  제16조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전자계약(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전자계산기의 영상면을 통해 체결되는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으로서,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이들의 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영상면에 표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그 사용하는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송신함으로써 그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고객이 전자계약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의 조작(해당 전자계약신청이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할 때 쉽게 확인 및 정정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호를 삭제한다]  [호를 삭제한다]  [호를 삭제한다]  2.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이 생략]  삼.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법 제12조의 4 제1항 및 동제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의 3 제2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동조 제5항 각호에 열거하는 업무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위탁하는 것.  [3/4 생략]  제20조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하는 법 제18조 제5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항, 제3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  | | --- | --- | | 일. 상품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19조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18조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신청자 등(법 제24조 제1항의 신청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 3에서 같다)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상품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을 것.  나. “가”에 기재한 사항과 무관하게, 신청자 등이 판매업자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인하거나, 또는 판매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거나, 이들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 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판매업자가 교부한 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서면을 해당 신청자 등이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신청자 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  다. “가” 또는 “나”의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는 신청자 등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 그 효력을 가질 것.  [라~사 생략] | | 라. 권리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19조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18조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 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권리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나. “가”에 기재한 사항과 무관하게, 신청자 등이 판매업자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인하거나, 또는 판매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거나. 이들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판매업자가 교부한 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서면을 해당 신청자 등이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신청자 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  다. “가” 또는 “나”의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는 신청자 등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라~아 생략] | | 삼. 역무제공계약신청철회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19조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18조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 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역무제공계약신청철회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나. “가”에 기재한 사항과 무관하게, 신청자 등이 역무제공사업자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역무제공계약신청철회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계약해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인하거나,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거나, 이들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역무제공사업자가 교부한 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서면을 해당 신청자 등이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신청자 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  다. “가” 또는 “나”의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는 신청자 등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라~사 생략] |   [2~6 생략]  (계약신청철회 등 방해 후 서면교부)  제23조의 3 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일. [생략]  이. 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매매계약 혹은 역무제공계약의 신청철회 또는 매매계약 혹은 역무제공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삼~십 생략]  [2~5 생략]  (특별이익)  제24조 법 33조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중 하나로 한다.  일. 상품(법 제33조 제1항의 상품을 말한다. 다음 조, 제24조의 3, 제27조, 제30조 및 제31조의 4를 제외하고,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재판매, 수탁판매명 혹은 판매알선을 하는 다른 사람 또는 동종 역무의 제공 혹은 역무제공 알선을 하는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거래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일 것  [이/삼 생략]  (연쇄판매거래에 대한 광고)  제25조 법 제35조 제4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아래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이 생략]  삼. 통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연쇄판매업자가 외국법인 또는 외국에 주소를 가진 개인으로서, 국내에 사무소 등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 등의 소재장소 및 전화번호  사/오. [생략]  제30조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서면(이하, 이 조에서 “계약서면”이라고 한다)에는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표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  | | --- | --- | | 사항 | 내용 | | [일/이 생략] | | | 삼.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가. 계약서면을 수령한 날(그 계약에 관한 특정 부담이 재판매를 하는 상품의 구매에 대한 것일 경우, 그 계약에 근거하여 구입한 그 상품에 대해 최초 인도를 받은 날이 그 수령한 날 이후일 때는 그 인도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연쇄판매 가입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나. “가”에 기재한 사항과 무관하게, 연쇄판매 가입자가 통괄자 혹은 권유자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혹은 일반연쇄판매업자가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쇄판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인하거나, 또는 통괄자, 권유자 혹은 일반연쇄판매업자가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거나, 이들에 의해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연쇄판매업에 관한 통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연쇄판매업자가 교부한 동항의 서면을 해당 연쇄판매가입자가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연쇄판매가입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다. [생략]  라. “가” 또는 “나”의 계약 해제는 그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마/바 생략] | | 사. 법 제4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에 관한 연쇄판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가. 계약서면을 수령한 날(그 계약에 관한 특정부담이 재판매를 하는 상품의 구매에 대한 것일 경우, 그 계약에 근거하여 구매한 그 상품에 대해 최초 인도를 받은 날이 그 수령한 날 이후일 때는 그 인도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이 경과된 후, 연쇄판매가입자는 미래적으로 연쇄판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생략]  다. “가”에 기재한 사항에 의해 연쇄판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가 되기 전에 연쇄판매업을 수행하는 자가 연쇄판매가입자에게 이미 연쇄판매업에 관한 상품판매 등을 하였을 때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쇄판매 가입자는 상품판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1)~(3) 생략]  (4) 영 제10조의 3에서 정할 때  [라~바 생략] | | 오. 법 제4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에 관한 연쇄판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가. 계약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이 경과된 후, 연쇄판매가입자는 미래적으로 연쇄판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나/다 생략] | | [육/칠 생략] | |   2 계약서면에는 서면의 내용을 충분히 읽어야 할 내용을 빨간 틀 안에 빨간 글자로 기재해야 한다.  3 계약서면에는 일본산업규격 Z8305에 규정하는 8포인트 이상 크기의 문자 및 숫자를 이용해야 한다.  4 계약서면에 기재할 때, 제1항의 표 제3호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빨간 틀 안에 빨간 글자로 기재해야 한다.  (연쇄판매거래에서의 금지행위)  제31조 법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십 생략]  십일. 통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연쇄판매업자가 법 제36조의 4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6조의 3 제2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동조 제5항 각호에 열거하는 업무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위탁할 것.  (영 제10조의 2에서 준용하는 영 제3조의 4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제31조의 2 제7조의 3의 규정은 영 제10조의 2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영 제3조의 4에 규정하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의 3 제1항 중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통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연쇄판매업자”로,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사업자”는 “통괄자, 권유자 혹은 일반연쇄판매업자”로 변경한다.  (법 제39조의 2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  제31조의 3 법 제39조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법 제39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정지를 명 받은 업무의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로 한다.  2 법 제39조의 2 제2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법 제39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정지를 명 받은 업무의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한다.  3 법 제39조의 2 제3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법 제39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정지를 명 받은 업무의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한다.  (연쇄판매계약 해제 방해 후 서면 교부)  제31조의 4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일. [생략]  이.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연쇄판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삼~칠 생략]  [2~5 생략]  (영 별표 제4의 2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31조의 5 [생략]  제34조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이하, 이 조에서 “계약서면”이라고 한다)에 기재하는 동항 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  | | --- | --- | | 일. [생략] | | | 이.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 제2항에서 제7항까지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가. 계약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계약의 해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  나. “가”에 기재한 사항과 무관하게,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 사업자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인하거나,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여, 이들에 의해 법 제4조 역무제공계약을 해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역무제공사업자가 교부한 동항의 서면을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는 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다. “가” 또는 “나”의 계약해제는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라~아 생략]  자. “사”의 계약해제는 해당 계약해제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차~타] | | 삼. [생략] | |   2.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 계약에 관한 관련상품이 법 제48조 제2항 단서의 정령으로 정하는 관련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전부 혹은 일부를 소비했을 때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려면 계약서면에는 전항의 표 제2호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 외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일/이 생략]  [3~5 생략]  제36조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이하, 이 조에서 “계약서면”이라고 한다)에 기재하는 동항 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  | | --- | --- | | 일. [생략] | | | 이.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권리 판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 제2항에서 제7항까지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가. 계약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을 받을 권리를 구매하는 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특정권리 판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나. “가”에 기재한 사항과 무관하게,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을 받을 권리를 구매하는 자가 판매업자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권리 판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인하거나,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여, 이들에 의해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권리 판매계약을 해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판매업자가 교부한 동항의 서면을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권리를 구매하는 자가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권리를 구매하는 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해당 특정권리 판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다. “가” 또는 “나”의 계약해제는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권리를 구매하는 자가 해당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라~자 생략]  차. “아”의 계약해제는 해당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카~파 생략] | | 삼. [생략] | |   2 특정권리 매매계약에 관한 관련상품이 법 제48조 제2항 단서의 정령으로 정하는 관련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전부 혹은 일부를 소비했을 때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하려면 계약서면에 전항의 표 제2호의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 외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일/이. 생략]  [3~5 생략]  (과대광고 등의 금지)  제37조 법 제43조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일~육 생략]  칠.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 등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법 제48조 제1항에서 제7항까지 및 제49조 제1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팔/구. [생략]  (영 제13조의 2에서 준용하는 영 제3조의 4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제39조의 2 제7조의 3의 규정은 영 제13조의 2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영 제3조의 4에 규정하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준용한다.  (법 제47조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  제39조의 2의 2 법 제47조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법 제47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정지를 명 받은 업무의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한다.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계약의 해제 방해 후 서면 교부)  제39조의 2의 3 법 제48조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일/이. 생략]  삼.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사~팔. 생략]  2 [생략]  3 서면에 기재할 때,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빨간 틀 안에 빨간 글자로 기재해야 한다.  4 [생략]  5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48조 제1항의 서면을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수령자 등에게 교부했을 때는 즉시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수령자 등이 해당 서면을 보고 있음을 확인한 다음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하는 내용에 대해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 수령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대한 광고)  제40조 법 제53조 제4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이. 생략]  삼.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가 외국법인 또는 외국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국내에 사무소 등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 등의 소재장소 및 전화번호  사/오. [생략]  제45조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서면(이하, 이 조에서 “계약서면”이라고 한다)은 다음 표 좌측 란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각각 동표 우측 란의 기준에 합치한 것이어야 한다.   |  |  | | --- | --- | | 사항 | 기준 | | [일~삼. 생략] | |   2 계약서면에는 다음 표 좌측 란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표의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  | | --- | --- | | 사항 | 기준 | | [일~이. 생략] | | | 삼. 해당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법 제58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가. 계약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 상대방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나. “가”에 기재한 사항과 무관하게,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 상대방이 업무제공 유안판매업을 하는 자가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하였음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인하거나,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가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여, 이들에 의해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가 교부한 법 제58조 제1항의 서면을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 상대방이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 상대방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다. [생략]  라. “가” 또는 “나”의 계약해제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 상대방이 그 계약해제를 하는 내용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마/바. 생략] |   3 계약서면에는 서면의 내용을 충분히 읽어야 할 내용을 빨간 틀 안에 빨간 글자로 기재해야 한다.  4 계약서면에는 일본산업규격 Z8305에 규정하는 8포인트 이상 크기의 문자 및 숫자를 이용해야 한다.  5 계약서면에 기재할 때, 제2항의 표 제3호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빨간 틀 안에 빨간 글자로 기재해야 한다.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서의 금지행위)  제46조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칠. 생략]  팔.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가 법 제54조의 4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4조의 3 제2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동조 제5항 각호에 열거하는 업무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위탁할 것.  (영 제16조의 2에서 준용하는 영 제3조의 4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제46조의 2 제7조의 3의 규정은 영 제16조의 2에서 변경하는 준용하는 영 제3조의 4에 규정하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의 3 제1항 중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 및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사업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로 변경한다.  (법 제57조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  제46조의 3 법 제57조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법 제57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정지를 명 받은 업무의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한다.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의 해제 방해 후 서면 교부)  제46조의 4 법 제58조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일. [생략]  이.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이 경과될 때까지는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삼~칠. 생략]  [2~5 생략]  제48조 법 제58조의 8 제2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일~팔. 생략]  구.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대금의 전부를 지불하면서, 모든 물품의 인도를 받았을 때가 아닐 때는 법 제58조의 7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제50조 법 제58조의 7 또는 법 제58조의 8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하는 법 제58조의 7 제5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표 좌측 란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  | | --- | --- | | 일. 물품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58조의 8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58조의 7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시간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 등(법 제58조의 14 제1항의 신청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같다)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물품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가”에 기재한 사항과 무관하게, 신청자가 구매업자가 법 제58조의 10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인하거나, 또는 구매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여, 이들에 의해 해당 계약의 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구매업자가 교부한 법 제58조의 14 제1항 단서의 서면을 해당 신청자 등이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신청자 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해당 계약의 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  다. “가” 또는 “나”의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라~바 생략] |   2 [생략]  (영 제16조의 4에서 준용하는 영 제3조의 4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제54조의 2 제7조의 3의 규정은 영 제16조의 4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영 제3조의 4에 규정하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의 3 제1항 중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 및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사업자”는 “구매업자”로 변경한다.  (법 제58조의 13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  제54조의 3 법 제58조의 13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법 제58조의 13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정지를 명 받은 업무의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로 한다.  (계약신청철회 등 방해 후 서면 교부)  제55조 법 제58조의 14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일. [생략]  이. 법 제58조의 1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매매계약 해제할 수 있을 것.  [삼~십 생략]  [2~5 생략]  (통신매매계약 상대방이 물품을 처분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6조 영 제16조의 54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상대방이 그 주소에서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 한다.  (모법인 등 또는 관련법인 등)  제58조 영 제17조의 2의 표 비고 제1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인 등(동호에 규정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단, 재무상 또는 영업상 혹은 사업상 관계에서 보아 다른 법인 등의 의사결정기관(동호에 규정하는 의사결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지배하지 않음이 명확하게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생략]  이. 다른 법인 등 의결권의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50이하를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가. [생략]  나. 해당 법인 등의 임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혹은 사용인인 자, 또는 이들이었던 자로서 해당 법인 등이 해당 다른 법인 등의 재무 및 영업 또는 사무 방침 결정에 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해당 다른 법인 등의 이사회, 그 외 이에 준하는 기관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  다. [생략]  라. 해당 다른 법인 등의 자금조달액 총액의 과반에 대해 해당 법인 등이 융자를 하였을 것(해당 법인 등과 출자, 인사, 자금, 기술, 거래 등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가 실시하는 융자의 금액을 아울러 자금조달액 총액의 과반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생략]  삼. [생략]  2 [생략] | 목차  제1장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1절 [좌동]  제2절 방문판매(제3조-제7조의 4)  [제3절~제5절 좌동]  제2장 연쇄판매거래(제24조-제31조의 3)  제3장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제31조의 4-제39조의 2의 2)  제4장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제39조의 3-제46조의 3)  [제5장/제6장 좌동]  부칙  제6조 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하는 법 제4조 제5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항, 제3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표 좌측 란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  | | --- | --- | | 일. 상품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5조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4조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신청자 등(법 제9조 제1항의 신청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 4에서 같다)은 서면에 의해 상품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나. “가”에 기재한 사항과 무관하게, 신청자 등이 판매업자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인하거나, 또는 판매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여, 이들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판매계약이 교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의 서면을 해당 신청자 등이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8일을 경과할 때까지, 해당 신청자 등은 서면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  다. “가” 또는 “나”의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는 신청자 등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에 관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라~사 좌동] | | 라. 권리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5조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4조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 등은 서면에 의해 권리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나. “가”에 기재한 사항과 무관하게, 신청자 등이 판매업자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의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인하거나, 또는 판매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거나, 이들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판매업자가 교부한 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서면을 해당 신청자 등이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신청자 등은 서면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  다. “가” 또는 “나”의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는 신청자 등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에 관한 서면를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라~아 생략] | | 삼. 역무제공계약신청철회 또는 역무제공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5조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4조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는 서면에 의해 역무제공계약신청철회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을 것.  나. “가”에 기재한 사항과 무관하게, 신청자 등이 역무제공사업자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역무제공계약신청철회 또는 역무제공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인하거나, 또는 역주제공사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거나, 이들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역무제공사업자가 교부한 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서면을 해당 신청자 등이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신청자 등은 서면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    다. “가” 또는 “나”의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는 신청자 등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에 관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라~바 좌동] |   [2~6 좌동]  (법 제8조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의 2 법 제8조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지를 명 받은 업무의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한다.  (업무를 통괄하는 자에 준하는 자)  제7조의 3 [좌동]  [조를 추가한다]  [조를 추가한다]  (계약신청철회 등 방해 후의 서면 교부)  제7조의 4 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일. [좌동]  이. 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는 서면에 의해 매매계약 혹은 역무제공계약신청철회 또는 매매계약 혹은 역무제공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삼~십 좌동]  [2~5 좌동]  (통신판매에 대한 광고)  제8조 법 제11조 제5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이 좌동]  삼. 신청의 유효기한이 있을 때는 그 기한  [사~육 좌동]  칠. 상품의 매매계약을 2회 이상 계속해서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취지 및 금액, 계약기간, 그 외 판매조건  [팔~십 좌동]  제9조 법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해 통신판매를 할 경우의 상품 혹은 특정권리의 판매조건 또는 역무제공조건에 대해 광고할 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일/이 생략]  삼. 상품 혹은 특정권리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법 제15조의 3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있어서 잘 보이는 위치에 명료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 그 외 고객에게 있어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제10조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호 및 제8조 제1항 제4호에 정하는 구매자 또는 역무제공을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전을 전부 표시하지 않기로 하며, 이 경우 법 제11조 각호에 정하는 사항(제8조 제3호 및 제6호에서 제10호까지 열거하는 사항과 법 제15조의 3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매매계약 해제(이하, 이 조에서, “신청철회 등”이라고 한다)의 가부, 신청철회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철회 등이 가능한 기간, 그 외 신청철회 등이 가능해지는 조건 및 상품 또는 특정권리의 거래 혹은 반환에 요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구매자 또는 역무제공을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전의 전부를 표시할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2호에서 제5호까지 정하는 사항(제8조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서 제10호까지 열거하는 사항 및 법 제15조의 3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철회 가부, 신청철회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철회 등이 가능한 기간, 그 외 신청철회 등이 가능해지는 조건 및 상품 또는 특정권리의 거래 혹은 반환에 요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에 관한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불이 상품 인도 혹은 권리 이전 또는 역무 제공 전인 경우에는 상품 혹은 권리의 대금 또는 역무대가의 지불시기,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관한 상품을 송부하지 않을 경우 혹은 권리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역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3호에 열거하는 사항 및 인도된 상품이 종류 또는 품질에 관해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판매업자가 그 부적합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좌동]  (기록의 보존)  제11조의 5 법 제12조의 3 제3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전자적 방법은 제외한다)에 의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거나, 또는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승낙 또는 청우마다 해당 승낙 또는 청구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이하, “서면 등”이라고 한다). 단,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해당 승낙을 얻거나, 또는 청구를 받기 위해 정형적인 내용을 표시하고 있으면서, 해당 승낙을 얻거나, 또는 청구를 받았을 때 해당 승낙 또는 청구 내용에 관한 정보를 일람성 있는 전자적 기록으로 자동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정형적인 내용의 표시에 있어서, 해당 전자계산기의 조작이 해당 상대방에게 통신판매 전자메일로 광고하는 것을 승낙하거나, 또는 청구하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승낙을 얻거나, 또는 청구서를 받기 위해 표시한 정형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서면 및 해당 내용의 표시가 된 시기를 나타내는 서면 등.  이. [좌동]  2. [좌동]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제14조 법 제13조 제2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일/이 좌동]  [2/3 좌동]  (통신판매에서의 금지행위)  제16조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업자가 전자계약(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전자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전자계산기 영상면을 통해 체결되는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으로서,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이들의 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영상면에 표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그 사용하는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송신함으로써, 그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다음 호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을 경우, 전자계약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의 조작(해당 전자계약신청이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이 해당 전가계산 신청이 됨을 고객이 해당 조작을 할 때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것.  이.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전자계약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고객이 전자계약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를 조작할 때 쉽게 확인 및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은 것.  삼.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신청 양식이 인쇄된 서면에 의해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서면의 송부가 신청이 됨을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서면에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것.  2.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이 좌동]  삼.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법 제12조의 4 제1항 및 동제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의 3 제2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동조 제12조의 3 제5항 각호에 열거하는 업무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위탁하는 것.  [3/4 생략]  제20조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하는 법 제18조 제5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항, 제3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  | | --- | --- | | 일. 상품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19조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18조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신청자 등(법 제24조 제1항의 신청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 3에서 같다)은 서면에 의해 상품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을 것.  나. “가”에 기재한 사항과 무관하게, 신청자 등이 판매업자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인하거나, 또는 판매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거나, 이들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 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판매업자가 교부한 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서면을 해당 신청자 등이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신청자 등은 서면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  다. “가” 또는 “나”의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는 신청자 등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에 관한 서면을 보냈을 때, 그 효력을 가질 것.  [라~사 좌동] | | 라. 권리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19조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18조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 등은 서면에 의해 권리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나. “가”에 기재한 사항과 무관하게, 신청자 등이 판매업자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의 매매계약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인하거나, 또는 판매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거나, 이들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판매업자가 교부한 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서면을 해당 신청자 등이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신청자 등은 서면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  다. “가” 또는 “나”의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는 신청자 등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에 관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라~아 좌동] | | 삼. 역무제공계약신청철회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19조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18조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 등은 서면에 의해 역무제공계약신청철회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나. “가”에 기재한 사항과 무관하게, 신청자 등이 역무제공사업자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역무제공계약신청철회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계약해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인하거나,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거나, 이들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역무제공사업자가 교부한 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서면을 해당 신청자 등이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신청자 등은 서면에 의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  다. “가” 또는 “나”의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는 신청자 등이 해당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에 관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라~사 생략] |   [2~6 좌동]  (계약신청철회 등 방해 후 서면교부)  제23조의 3 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일. [좌동]  이. 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에 의해 매매계약 혹은 역무제공계약의 신청철회 또는 매매계약 혹은 역무제공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삼~십 좌동]  [2~5 좌동]  (특별이익)  제24조 법 33조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중 하나로 한다.  일. 상품(법 제33조 제1항의 상품을 말한다. 다음 조, 제24조의 3, 제27조, 제30조 및 제31조의 3을 제외하고,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재판매, 수탁판매명 혹은 판매알선을 하는 다른 사람 또는 동종 역무의 제공 혹은 역무제공 알선을 하는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거래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일 것  [이/삼 좌동]  (연쇄판매거래에 대한 광고)  제25조 법 제35조 제4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아래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이 좌동]  [호를 추가한다]  삼/사. [좌동]  제30조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서면(이하, 이 조에서 “서면”이라고 한다)에는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표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  | | --- | --- | | 사항 | 내용 | | [일/이 생략] | | | 삼.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법 제4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가. 법 제37조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계약에 관한 특정 부담이 재판매를 하는 상품의 구매에 대한 것일 경우, 그 계약에 근거하여 구입한 그 상품에 대해 최초 인도를 받은 날이 그 수령한 날 이후일 때는 그 인도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연쇄판매 가입자는 서면에 의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나. “가”에 기재한 사항과 무관하게, 연쇄판매 가입자가 통괄자 혹은 권유자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혹은 일반연쇄판매업자가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쇄판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인하거나, 또는 통괄자, 권유자 혹은 일반연쇄판매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거나, 이들에 의해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연쇄판매업에 관한 통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연쇄판매업자가 교부한 법 제40조 제1항의 서면을 해당 연쇄판매가입자가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연쇄판매가입자는 서면 의해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다. [좌동]  라. “가” 또는 “나”의 계약 해제는 그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서면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마/바 생략] | | 사. 법 제4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에 관한 연쇄판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가. 법 제37조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계약에 관한 특정부담이 재판매를 하는 상품의 구매에 대한 것일 경우, 그 계약에 근거하여 구매한 그 상품에 대해 최초 인도를 받은 날이 그 수령한 날 이후일 때는 그 인도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이 경과된 후, 연쇄판매가입자는 미래적으로 연쇄판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좌동]  다. “가”에 기재한 사항에 의해 연쇄판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가 되기 전에 연쇄판매업을 수행하는 자가 연쇄판매가입자에게 이미 연쇄판매업에 관한 상품판매 등을 하였을 때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쇄판매 가입자는 상품판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1)~(3) 생략]  (4) 영 제10조의 2에서 정할 때  [라~바 좌동] | | 오. 법 제4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에 관한 연쇄판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가. 법 제37조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이 경과된 후, 연쇄판매가입자는 미래적으로 연쇄판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나/다 생략] | | [육/칠 좌동] | |   2 서면에는 서면의 내용을 충분히 읽어야 할 내용을 빨간 틀 안에 빨간 글자로 기재해야 한다.  3 서면에는 일본산업규격 Z8305에 규정하는 8포인트 이상 크기의 문자 및 숫자를 이용해야 한다.  4 서면에 기재할 때, 제1항의 표 제3호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빨간 틀 안에 빨간 글자로 기재해야 한다.  (연쇄판매거래에서의 금지행위)  제31조 법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십 좌동]  십일. 통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연쇄판매업자가 법 제36조의 4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6조의 3 제2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법 제36조의 3 제5항 각호에 열거하는 업무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위탁할 것.  [조를 추가한다]  (법 제39조의 2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  제31조의 2 법 제39조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지를 명 받은 업무의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로 한다.  2 법 제39조의 2 제2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지를 명 받은 업무의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한다.    3 법 제39조의 2 제3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정지를 명 받은 업무의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한다.  (연쇄판매계약 해제 방해 후 서면 교부)  제31조의 3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일. [좌동]  이.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연쇄판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삼~칠 좌동]  [2~5 좌동]  (영 별표 제4의 2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31조의 4 [좌동]  제34조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이하, 이 조에서 “계약서면”이라고 한다)에 기재하는 동항 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  | | --- | --- | | 일. [생략] | | | 이.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 제2항에서 제7항까지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가. 계약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계약의 해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  나. “가”에 기재한 사항과 무관하게,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 사업자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인하거나,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여, 이들에 의해 법 제4조 역무제공계약을 해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역무제공사업자가 교부한 법 제48조 제1항의 서면을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는 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다. “가” 또는 “나”의 계약해제는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서면을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라~아 생략]  자. “사”의 계약해제는 해당 계약해제에 관한 서면을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차~타] | | 삼. [좌동] | |   2.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 계약에 관한 관련상품이 법 제48조 제2항 단서의 정령으로 정하는 관련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전부 혹은 일부를 소비했을 때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려면 전항 서면에는 동항의 표 제2호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 외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일/이 좌동]  [3~5 좌동]  제36조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이하, 이 조에서 “계약서면”이라고 한다)에 기재하는 동항 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  | | --- | --- | | 일. [좌동] | | | 이.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권리 판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 제2항에서 제7항까지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가. 계약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을 받을 권리를 구매하는 자는 서면에 의해 특정권리 판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나. “가”에 기재한 사항과 무관하게,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을 받을 권리를 구매하는 자가 판매업자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권리 판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인하거나,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여, 이들에 의해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권리 판매계약을 해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판매업자가 교부한 법 제48조 제1항의 서면을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권리를 구매하는 자가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권리를 구매하는 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특정권리 판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다. “가” 또는 “나”의 계약해제는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권리를 구매하는 자가 해당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라~자 생략]  차. “아”의 계약해제는 해당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카~파 생략] | | 삼. [좌동] | |   2 특정권리 매매계약에 관한 관련상품이 법 제48조 제2항 단서의 정령으로 정하는 관련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전부 혹은 일부를 소비했을 때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하려면 전항의 서면에 동항의 표 제2호의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 외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일/이. 좌동]  [3~5 좌동]  (과대광고 등의 금지)  제37조 법 제43조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일~육 생략]  [호를 추가한다]  칠/팔. [좌동]  [조를 추가한다]  (법 제47조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  제39조의 2의 법 제47조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지를 명 받은 업무의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한다.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계약의 해제 방해 후 서면 교부)  제39조의 2의 2 법 제48조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일/이. 좌동]  삼.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에 의해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사~팔. 좌동]  2 [좌동]  3 서면에 기재할 때, 제1항 제3호 및 동항 제4호에 열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빨간 틀 안에 빨간 글자로 기재해야 한다.  4 [좌동]  5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48조 제1항의 서면을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수령자 등에게 교부했을 때는 즉시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수령자 등이 해당 서면을 보고 있음을 확인한 다음 제1항 제3호 및 동항 제4호에 열거하는 내용에 대해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 수령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대한 광고)  제40조 법 제53조 제4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이. 좌동]  [호를 추가한다]  삼/사. [좌동]  제45조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서면(이하, 이 조에서 “서면”이라고 한다)은 다음 표 좌측 란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각각 동표 우측 란의 기준에 합치한 것이어야 한다.   |  |  | | --- | --- | | 사항 | 기준 | | [일~삼. 좌동] | |   2 서면에는 다음 표 좌측 란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표의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  | | --- | --- | | 사항 | 기준 | | [일~이. 좌동] | | | 삼. 해당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법 제58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가. 법 제55조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 상대방은 서면에 의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나. “가”에 기재한 사항과 무관하게,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 상대방이 업무제공 유안판매업을 하는 자가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하였음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인하거나,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여, 이들에 의해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가 교부한 법 제58조 제1항의 서면을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 상대방이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 상대방은 서면에 의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다. [좌동]  라. “가” 또는 “나”의 계약해제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 상대방이 그 계약해제를 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마/바. 생략] |   3 서면에는 서면의 내용을 충분히 읽어야 할 내용을 빨간 틀 안에 빨간 글자로 기재해야 한다.  4 서면에는 일본산업규격 Z8305에 규정하는 8포인트 이상 크기의 문자 및 숫자를 이용해야 한다.  5 서면에 기재할 때, 제2항의 표 제3호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빨간 틀 안에 빨간 글자로 기재해야 한다.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서의 금지행위)  제46조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칠. 좌동]  팔.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가 법 제54조의 4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4조의 3 제2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법 제54조의 3 5제항 각호에 열거하는 업무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위탁할 것.  [조를 추가한다]  (법 제57조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  제46조의 2 법 제57조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지를 명 받은 업무의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한다.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의 해제 방해 후 서면 교부)  제46조의 3 법 제58조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일. [생략]  이.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이 경과될 때까지는 서면에 의해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삼~칠. 생략]  [2~5 생략]  제48조 법 제58조의 8 제2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일~팔. 생략]  구.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대금의 전부를 지불하면서, 모든 물품의 인도를 받았을 때가 아닐 때는 법 제58조의 7 제3호 및 동조 제4호의 사항  제50조 법 제58조의 7 또는 법 제58조의 8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하는 법 제58조의 7 제5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표 좌측 란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  | | --- | --- | | 일. 물품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58조의 8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58조의 7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시간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 등(법 제58조의 14 제1항의 신청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같다)은 서면에 의해 물품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가”에 기재한 사항과 무관하게, 신청자가 구매업자가 법 제58조의 10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인하거나, 또는 구매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여, 이들에 의해 해당 계약의 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구매업자가 교부한 법 제58조의 14 제1항 단서의 서면을 해당 신청자 등이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신청자 등은 서면에 의해 해당 계약의 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  다. “가” 또는 “나”의 계약신청철회 또는 계약해제에 관한 서면을 보냈을 때, 그 효력을 일으킬 것.  [라~바 좌동] |   2 [좌동]  [조를 추가한다]  (법 제58조의 13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  제54조의 2 법 제58조의 13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법 제58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지를 명 받은 업무의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로 한다.  (계약신청철회 등 방해 후 서면 교부)  제55조 법 제58조의 14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일. [좌동]  이. 법 제58조의 1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에 의해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삼~십 좌동]  [2~5 좌동]  (통신매매계약 상대방이 물품을 처분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6조 영 제16조의 3 제4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상대방이 그 주소에서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 한다.  (모법인 등 또는 관련법인 등)  제58조 영 제17조의 2의 표 비고 제1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인 등(동호에 규정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단, 재무상 또는 영업상 혹은 사업상 관계에서 보아 다른 법인 등의 의사결정기관(동호에 규정하는 의사결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지배하지 않음이 명확하게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생략]  이. 다른 법인 등 의결권의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50이하를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가. [생략]  나. 해당 법인 등의 임원(이사, 집행역, 회계참여(회계참여가 법인일 때는 그 직무를 해야 하는 사원을 포함한다), 감사역 또는 이들과 유사한 직무에 있는 자를 말한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혹은 사용인인 자, 또는 이들이었던 자로서 해당 법인 등이 해당 다른 법인 등의 재무 및 영업 또는 사무 방침 결정에 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해당 다른 법인 등의 이사회, 그 외 이에 준하는 기관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  다. [생략]  라. 해당 다른 법인 등의 자금조달액(대차대조표의 부채 부에는 계상된 것으로 한정한다) 총액의 과반에 대해 해당 법인 등이 융자(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였을 것(해당 법인 등과 출자, 인사, 자금, 기술, 거래 등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가 실시하는 융자의 금액을 아울러 자금조달액 총액의 과반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좌동]  삼. [좌동]  2 [좌동] |

|  |  |
| --- | --- |
| 양식 제1 (제7조의 5 및 제23조의 3 관련)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근거하는 쿨링 오프 방해 해소를 위한 서면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여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부터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판매업자는 모든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상품 거래에 요하는 비용은 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5) 이미 상품을 사용했어도 판매업자는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상품의 대금이 이미 지불되었을 때, 판매업자는 신속히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쿨링 오프의 대상이 되는 계약>  계약자명:  계약체결일:  계약내용:  계약금액:  판매업자의 명칭 인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비고)  일. 전화권유판매의 경우에는 양식 중 “제9조 제1항”을 “제2조 제1항”으로 할 것  이. 권리판매계약의 경우에는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성령”이라고 한다) 제7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전화권유판매의 경우에는 성령 제23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여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부터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판매업자는 모든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권리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5) 이미 권리를 행사했어도, 판매업자는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판매업자에 대해,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무상으로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권리 대금이 이미 지불되었을 때, 판매업자는 신속히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삼. 역무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양식 중 “판매업자”를 “역무제공사업자”로 할 것.  사. 역무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7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전화권유판매의 경우에는 성령 제23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역무제공사업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여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부터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역무제공사업자는 모든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이미 역무 제공을 받았어도, 역무제공사업자는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역무제공사업자에 대해,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무상으로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역무의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을 때, 역무제공사업자는 신속히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양식 제2 (제31조의 4 관련)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근거하는 쿨링 오프 방해 해소를 위한 서면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부터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모든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지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상품의 거래에 요하는 비용은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5) 상품의 대금이 이미 지불되었을 때 또는 거래요금이 이미 제공되었을 때는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신속히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쿨링 오프의 대상이 되는 계약>  계약자명:  계약체결일:  계약내용:  계약금액: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의 명칭 인  주소  전화번호  통괄자의 명칭 인  주소  전화번호  (비고)  일. 시설을 이용하거나 또는 역무제공을 받을 권리를 판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31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부터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모든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지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권리의 대금이 이미 지불되었을 때 또는 거래요금이 이미 제공되었을 때,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신속히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역무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31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모든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지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역무의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을 때 또는 거래요금이 이미 제공되었을 때,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신속히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양식 제3 (제39조의 2의 3 관련)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는 쿨링 오프 방해의 해소를 위한 서면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역무제공사업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로부터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역무제공사업자는 모든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지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이미 역무제공을 받았어도 역무제공사업자는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역무의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을 때, 역무제공사업자는 신속히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6) 관련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쿨링 오프의 대상이 되는 계약>  계약자명:  계약체결일:  계약내용:  계약금액:  역무제공사업자의 명칭 인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관련상품판매업자의 명칭 인  주소  전화번호  (비고)  일. 특정권리 판매계약의 경우에는 양식 중 “역무제공사업자”를 “판매업자”로 할 것  이. 특정권리 판매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39조의 2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부터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판매업자는 모든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권리의 반환에 요하는 비용은 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5) 이미 역무의 제공을 받고 있어도, 판매업자는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역무의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을 때, 판매업자는 신속히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7) 관련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양식 제4 (제46조의 4 관련)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근거하는 쿨링 오프 방해의 해소를 위한 서면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부터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모든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지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상품 거래에 요하는 비용은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5) 상품의 대금이 이미 지불되었을 때 또는 거래요금이 이미 제공되었을 때,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신속히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쿨링 오프의 대상이 되는 계약>  계약자명:  계약체결일:  계약내용:  계약금액: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의 명칭 인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비고)  일. 시설을 이용하거나 또는 역무 제공을 받을 권리를 판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46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모든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지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권리의 대금이 이미 지불되었을 때 또는 거래요금이 이미 제공되었을 때,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신속히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역무제공 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46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모든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지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역무의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을 때 또는 거래요금이 이미 제공되었을 때,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신속히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양식 제6 (제55조 관련)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14 제1항에 근거하는 쿨링 오프 방해의 해소를 위한 서면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구매업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로부터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쿨링 오프의 효력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단, 제3자가 쿨링 오프된다는 내용 또는 쿨링 오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모르면서, 그 모르는 것에 대해 과실이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구매업자는 쿨링 오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품 지불을 일체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물품의 대금을 이미 수취했을 때, 그 대금의 반환에 요하는 비용은 구매업자가 부담합니다.  (6) 물품의 인도가 이미 되었을 때, 구매업자는 신속히 그 물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쿨링 오프의 대상이 되는 계약>  계약자명:  계약체결일:  계약내용:  계약금액:  구매업자의 명칭 인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 양식 제1 (제7조의 4 및 제23조의 3 관련)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근거하는 쿨링 오프 방해 해소를 위한 서면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여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부터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을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판매업자는 모든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상품 거래에 요하는 비용은 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5) 이미 상품을 사용했어도 판매업자는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상품의 대금이 이미 지불되었을 때, 판매업자는 신속히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쿨링 오프의 대상이 되는 계약>  계약자명:  계약체결일:  계약내용:  계약금액:  판매업자의 명칭 인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비고)  일. 전화권유판매의 경우에는 양식 중 “제9조 제1항”을 “제2조 제1항”으로 할 것  이. 권리판매계약의 경우에는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성령”이라고 한다) 제7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전화권유판매의 경우에는 성령 제23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여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부터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을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판매업자는 모든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권리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5) 이미 권리를 행사했어도, 판매업자는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판매업자에 대해,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무상으로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권리 대금이 이미 지불되었을 때, 판매업자는 신속히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삼. 역무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양식 중 “판매업자”를 “역무제공사업자”로 할 것.  사. 역무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7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전화권유판매의 경우에는 성령 제23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역무제공사업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여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부터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을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역무제공사업자는 모든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이미 역무 제공을 받았어도, 역무제공사업자는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역무제공사업자에 대해,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무상으로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역무의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을 때, 역무제공사업자는 신속히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양식 제2 (제31조의 3 관련)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근거하는 쿨링 오프 방해 해소를 위한 서면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부터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을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모든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지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상품의 거래에 요하는 비용은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5) 상품의 대금이 이미 지불되었을 때 또는 거래요금이 이미 제공되었을 때는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신속히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쿨링 오프의 대상이 되는 계약>  계약자명:  계약체결일:  계약내용:  계약금액: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의 명칭 인  주소  전화번호  통괄자의 명칭 인  주소  전화번호  (비고)  일. 시설을 이용하거나 또는 역무제공을 받을 권리를 판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31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부터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을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모든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지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권리의 대금이 이미 지불되었을 때 또는 거래요금이 이미 제공되었을 때,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신속히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역무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31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을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모든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지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역무의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을 때 또는 거래요금이 이미 제공되었을 때,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신속히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양식 제3 (제39조의 2의 2 관련)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는 쿨링 오프 방해의 해소를 위한 서면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역무제공사업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로부터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을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역무제공사업자는 모든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지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이미 역무제공을 받았어도 역무제공사업자는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역무의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을 때, 역무제공사업자는 신속히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6) 관련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쿨링 오프의 대상이 되는 계약>  계약자명:  계약체결일:  계약내용:  계약금액:  역무제공사업자의 명칭 인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관련상품판매업자의 명칭 인  주소  전화번호  (비고)  일. 특정권리 판매계약의 경우에는 양식 중 “역무제공사업자”를 “판매업자”로 할 것  이. 특정권리 판매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39조의 2의 2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부터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을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판매업자는 모든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권리의 반환에 요하는 비용은 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5) 이미 역무의 제공을 받고 있어도, 판매업자는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역무의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을 때, 판매업자는 신속히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7) 관련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양식 제4 (제46조의 3 관련)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근거하는 쿨링 오프 방해의 해소를 위한 서면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부터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을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모든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지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상품 거래에 요하는 비용은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5) 상품의 대금이 이미 지불되었을 때 또는 거래요금이 이미 제공되었을 때,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신속히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쿨링 오프의 대상이 되는 계약>  계약자명:  계약체결일:  계약내용:  계약금액: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의 명칭 인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비고)  일. 시설을 이용하거나 또는 역무 제공을 받을 권리를 판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46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을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모든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지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권리의 대금이 이미 지불되었을 때 또는 거래요금이 이미 제공되었을 때,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신속히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역무제공 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46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을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모든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지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역무의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을 때 또는 거래요금이 이미 제공되었을 때,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신속히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양식 제6 (제55조 관련)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14 제1항에 근거하는 쿨링 오프 방해의 해소를 위한 서면  이 서면은 아래 계약에 대해 쿨링 오프를 방해하기 위해 구매업자가 부실함을 알리거나, 또는 위협함으로써 쿨링 오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1) 이 서면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날로부터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서면에 의해 쿨링 오프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서면을 보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그 때, 쿨링 오프의 효력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단, 제3자가 쿨링 오프된다는 내용 또는 쿨링 오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모르면서, 그 모르는 것에 대해 과실이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구매업자는 쿨링 오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품 지불을 일체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물품의 대금을 이미 수취했을 때, 그 대금의 반환에 요하는 비용은 구매업자가 부담합니다.  (6) 물품의 인도가 이미 되었을 때, 구매업자는 신속히 그 물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쿨링 오프의 대상이 되는 계약>  계약자명:  계약체결일:  계약내용:  계약금액:  구매업자의 명칭 인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
| 비고 표에서 [ ] 기재 및 대상규정에 이중으로 밑줄 친 부분을 제외한 전체에 그은 밑줄은 주석이다. | |

부칙

이 성령은 소비자피해의 방지 및 회복촉진을 위한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